

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8. 9. 18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8. 9. 18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64회 부천시의회(입사회)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(98. 9. 19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강석준)

가. 제안이유

○ 택지개발과 재개발사업의 업무량이 급증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

도시개발사업소를 설치코자 조례 제정

나. 주요골자

○ 도시과 업무분장 재조정

• 택지개발과 재개발사업 업무 전담부서 설치 → 도시개발사업소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재개발사업의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신설사업소로서 반대의견 없이 전원 찬성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

의안번호	제39호
의결년월일	98. 9. 22 (제64회)

제출년월일 : 1998. 9. 18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○ 택지개발과 재개발사업의 업무량이 급증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소를 설치코자 조례제정

주요골자

○ 도시과 업무분장 재조정

• 택지개발과 재개발사업 업무 전담부서 설치 → 도시개발사업소

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

제1조(설치) 택지개발과 재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(이하 "사업소"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위치) 사업소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에 둔다.

제3조(업무) 사업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택지개발 및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
2.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

제4조(소장)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지휘, 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